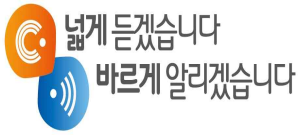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small>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mall>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5. 22(목) 총 13매(본문4, 붙임9)	
담당 부서 기술정책과 기술기준과 건설안전과	담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정책과장 정태화, 사무관 최신형, ☎ (044)201-3550 • (건설기술자) 정책과 서기관 박덕호, ☎ (044)201-3555 • (건설기술용역업) 기준과 사무관 천홍식, ☎ (044)201-3566 • (건설안전) 안전과 사무관 김광림, ☎ (044)201-3574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23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3(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 융합·통합형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로 개편 -
 -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특히,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21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다.
-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 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 * 현재는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
-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중·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함
 -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
-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함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둠
 -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
- *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음

-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함

*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자 25명, 자본금 5억 → (개정)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전문분야		업무범위
종합	종합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설계·사업관리	일반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
	설계등용역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등 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감리포함)
품질검사	일반/토목/건축/특수	품질시험·검사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함
-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함
- 발주청이 시특별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 함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 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별상 1·2종 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5월 23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최신행 사무관(☎ 044-201-3550)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세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 관련은 기술정책과 박덕호 서기관(☎ 044-201-3555), 건설기술용역업 관련은 기술기준과 천홍식 사무관(☎ 044-201-3566), 건설 및 시설물 안전 관련은 건설안전과 김광림 사무관(☎ 044-201-35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행령 주요 조문별 개정이유

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안 제4조 및 별표1]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 유사 건설ENG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 인력을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감리원으로 나누고 인정범위 및 등급체계도 각각 규정	○ 법률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 인력의 인정범위(자격) 통합 및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하고,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한 역량지수에 따라 기술자 등급을 산정·부여하도록 개선

□ 개정 이유 및 내용

- (건설기술자 인정범위) 건설기술자(시공·설계등 업무 수행)·품질관리자·감리원 등 건설기술 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한 법률개정에 맞춰
 -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자격)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관련 자격취득자,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통합(별표 1)
 - * 업무실태·자격체계에 맞게 직무분야 15개→10개, 전문분야 54개→46개로 개선
- (등급체계) 현행 자격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장기적으로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
 - * 현행 등급체계에서는 학력·경력 기반 건설기술자의 승급이 제한(박사취득 후 20년 경력을 쌓아도 초급) →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이상), 업계의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한 구조를 초래
 -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학력·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역량지수*를 활용하여, 건설기술자 등급을 산정하도록 개선(별표 1)
 - * 역량지수 산정법은 고시 예정: 경력(40점)·자격(40점)·학력(20점)·교육(가점 3점)

<건설기술 인력 등급 체계 개선안>

현 행			개 정 안	
구분	등급	승급	구분	등급·승급
건설 기술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각기 다른 승급 체계	건설 기술자	역량지수 (경력+자격+학력+교육)에 따른 등급부여 및 승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감리원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검측감리			
품질 관리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안 제42조 및 별표3)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감리원 별로 교육·훈련 체계를 달리 규정 -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는 각각 업무개시후 3년내에 3주·4주의 최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 인력 교육·훈련 체계를 통합하고 - 건설기술자는 업무개시 전에 2주의 최초교육을 이수토록 완화

□ 개정 이유 및 내용

- (교육훈련 체계) 건설기술 인력별로 각각 달리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단일체제로 전환(제42조)
- (교육훈련 시기·시간) 최초교육 취지(실무적응·이해도 향상)를 살리고 실무 배치 후 교육참석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 기술자로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교육을 받도록 하되
- 건설기술자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주(건설기술자)·4주(품질 관리자)의 교육시간을 2주로 단축(별표 3)

3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 (안 제44조 및 별표5)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수행 업무별로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업역을 구분	○관련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 등으로 구분하고, 등록요건을 정함

□ 개정 이유 및 내용

- (전문분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한 법률 취지를 고려, 건설기술 용역업 전문분야를 포괄적으로 정함(제44 조)
 - * (현행) 설계등용역업의 경우 엔지니어링법 상 신고된 세부분야(예: 도로 혹은 철도) 업무만 수행 →(개정) 모든 분야에 대한 설계등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
 - 특히, 건설ENG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 업역을 신설
 - * 다만, “품질검사”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업역분류 체계를 유지
- (등록요건) 건설ENG 진흥 및 업체간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등록요건을 정하되* 과도한 진입규제는 완화** (별표5)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전문분야		등록요건(인력·사무실·자본금·장비)	업무범위
종합	종합	특급 2인 포함 15인, 사무실, 자본금 2억 원 + 품질검사(일반)의 인력·장비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설계·사업관리	일반	특급 2인 포함 15인, 사무실, 자본금 2억 원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
	설계등용역	특급 1인 포함 5인, 사무실, 자본금 5천만 원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등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	특급 1인 포함 10인, 사무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건설사업관리(감리포함)
품질검사	일반토목건축특수	시험실 및 장비(현행과 동일)	품질시험·검사

** 종합감리업을 하려는 경우 규제완화 사례

현 행 (종합감리업으로 등록)	개 정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25인 (자본금) 5억원 (장 비) 소음측정기 등 4종	(기술자) 10인 (자본금) 1억 5천만 원 (장 비) 없음(임대 가능한 장비이므로 삭제)

- (경과조치) 기존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시행 후 1년까지 개정법에 따른 설계등용역업, 건설사업관리업, 품질검사업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간주(부칙 제11조)

* (법 부칙 제13조) 업무수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종전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개정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보되 1년내 시·도지사에게 개정법령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함

4 **건설기술용역업의 실적관리 (안 제45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설계·감리 등 업무별로 각각 다른 체계로 실적을 관리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적관리 체계를 정비

□ 개정 이유 및 내용

- (개정이유) 지금까지는 건설기술용역 관련 실적이 분산 작성·관리되고 검증체계도 미약하여 공신력이 부족하고 활용성도 낮았으나
 -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통합관리 근거가 마련됨(법 제30조)
- (실적통보) 발주청이 계약의 성립·변경·준공, 참여기술자 배치·철수 등 현황,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기술용역업의 실적과 관련된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제45조제1항)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제45조제2항)
- (사실확인) 발주청 등은 실적통보를 위해 용역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45조제3항)
 - 국토부장관은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발주청 등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5항)

- (실적공개) 국토부장관이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및 실적 등을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제45조제6항)
- 발주청 또는 용역업자 요청에 따라 용역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제45조제7항)

5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기준**
[안 제46조제48조 및 별표 6]

□ 주요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만 정함	○건설기술용역업 신설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을 정함 - 안전관련 의무위반은 영업정지 강화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금지	○안전관련 의무 위반 시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음 - 과징금 분할납부 금지는 삭제

□ 개정 이유 및 내용

- (행정처분) 법에서 정한 25가지 사유별로 현행 감리전문회사 규정 등을 준용하여 등록취소·영업정지의 기준을 정함(제46조 및 별표 6)

*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영업정지 사유(2가지)

- ① 발주청 승인 없는 하도급 : 3개월(1차 위반), 6개월(2차 이상)
-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부정 배치·교체 : 6개월

- 다만, 사회적으로 건설공사·시설물 안전성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강화

영업정지 사유	현행	개정안
주요구조부 붕괴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8개월(1차), 12개월(2차 이상)	12개월(1차부터)
주요구조부 구조안전에 중대결함 발생	4개월(1차), 6개월(2차 이상)	6개월(1차), 12개월(2차부터)

- (과징금) 현재는 모든 영업정지 사유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징금의 분할납부는 금지

- 영업정지의 실효성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함**(제48조 및 별표 6)
- * 법 제31조제1항제8호의 사유 중 주요 구조부 구조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분납금지 규정은 삭제**(제48조)

6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영 제51조 및 제55조·제59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계획 공고, PQ 등 용역업자 선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 안전진단기관 선정 시는 집행계획 공고, PQ 등 용역업자 선정절차를 따르도록 함
○ 건설사업관리와 검측·시공·책임 감리를 별개로 규정	○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기준을 마련

□ 개정 이유 및 내용

- **(용역업자 선정)** 민자사업자·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 일반 공공발주청의 경우는 2.3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의 용역업자 선정시 법정 기준에 의한 집행계획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거쳐야 함
- **시설안전 강화를 위해, 민간 발주청도 안전점검을 수행할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공고·PQ를 거치도록 함**(제51조)
 - * 민자사업자 등이 운영 중인 시설물의 안전진단은 최저가 입찰(통상 설계금액 대비 20% 수준에서 낙찰) 등에 따라 부실 안전진단이 우려
- **(건설사업관리·감리의 시행)**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는 설계전부터 시공후 단계까지 중 선택하여 계약으로 업무내용*을 정하도록 함(제59조제1항)

* 건설공사의 계약·설계·공정·품질·안전·환경에 대한 관리 등

- 다만, 건설공사 감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책임감리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므로 “책임감리”를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로 전환(제55조)**

*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현행 책임감리 대상인 200억 이상 22개 공정으로 하고, 현행 책임감리 업무(법령·기준 준수 검토, 공법·재료 선정의 적합성 검토, 설계·구조계산 검토, 감독권 대행 등)를 포함토록 함(제59조제2항·제3항)

7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안 제98조 및 제100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 건설업자는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형식적 절차에 그침	○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사 전 시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를 의무화
○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은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경우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의무화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등도 장기간 방치후 공사 재개시 안전 점검을 의무화

□ 개정 이유 및 내용

○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건설업자는 착공전 **안전관리계획** 작성 이후 감리원 확인 및 발주청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의 전문성에 부족으로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음**

* 안전관리계획서의 84%가 적정(보완불필요)으로 심사되고 있음. 이에 반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는 90%가 보완필요로 심사

- 심사 내실화를 위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사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를 의무화(제98조제4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 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톤 이상 댐, 16층·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 (방치현장의 안전점검) 1년 이상 공사중단·방치현장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상은 시특법상 1·2종 시설물로 한정
-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외 안전사고 위험이 큰 일반시설물*도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제100조제1항제4호)
-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8 **건설사업관리 공제조합 (안 제108조 ~ 제113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 건설감리협회의 사업 중 하나로 공제사업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정하지 않음	○ 법 개정으로 공제조합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 조합원 및 지분, 보증 및 공제사업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

□ 개정 이유 및 내용

- (공제조합의 설립) 건설사업관리업자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관기재·등기사항을 정함(제108조·제109조)
 - * (정관내용) 목적, 명칭, 소재지, 조합원 자격, 회계, 총회, 업무집행 등 13가지 (등기사항) 목적, 소재지, 출자금·출자방법, 양도제한, 임원, 대표권 제한 등 13가지
- (조합원 및 지분) 대외적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조합원 및 조합채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 지분액을 한도로 하고(제110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건설사업관리업자)만 조합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제111조)
- (보증·공제 사업)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함(제112조)
 - * (보증규정) 보증사업 범위, 보증계약 내용,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책임준비금 등 (공제규정) 공제사업 범위, 공제계약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충당 준비금 등

- (보증한도) 과도한 보증에 의한 조합 부실화 방지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해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보증한도로 정함 (제113조)

* 용역업 분야의 일반적인 보증한도임(엔지니어링 공제조합도 40배 적용)

9

기타 개정사항

1 용역·시공 종합평가의 기준 (안 제84조)

- (현행) 용역업자 및 건설업자의 기술·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업체별로 용역·시공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업자를 선정
 - * 우수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의 용역업자·건설업자 선정시 우대
- (개정)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장관이 발주청별 용역·시공 평가 결과를 종합평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 제50조)
 - 종합평가의 고려요소*를 정하고 세부 평가기준·방법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 하자·재해, 하도급거래 위반여부, 기술개발투자 실적 등

2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개선 (안 제86조)

- (현행) 5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사후평가 실시
 - * 건설공사 사후평가: 공공사업 효율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완공후 3~5년내 발주청이 사업 전반의 성과(공사비·설계변경·안전사고), 효율(수요예측·이용 실적 비교), 파급효과 등을 분석
- (개정) 공공사업 환류체계 강화를 위해 사후평가 대상을 300억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하되 300~500억 건설공사는 간이평가*를 하게 함
 - * 타당성조사(수요분석 등 포함) 대상이 500억 이상 공사인 점을 고려, 사후평가 항목중 실제수요·공사효과 비교분석 및 주민효용·사용자 만족도는 제외하고 평가